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5747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478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57478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6. 30.

판결 선고2016. 7.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55,344원과 그중 88,813,817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5.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2. 5. 접수 제11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주식회사 A, B,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사해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E)

가. 피고 E의 본안전 항변

피고 E은 피고 B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에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나, 피고 E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피고 B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2. 3.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은 2009. 8. 21. 및 2010. 8. 4. 각 체결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보다 수년이나 앞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B이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7. 31. 폐업신고 되었으나, 2015. 1.부터 매출 거래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피고 회사는 늦어도 2015. 1.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놓여 있었던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남양주시 F아파트 105동 1004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2015. 2.과 2015. 7.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처분하였던 점, ④ 피고 B과 피고 G은 매형과 처남관계인데다가, 피고 G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2014. 1. 13.부터 피고 B에게 개인적으로 영업자금을 대여하고 있어, 피고 G은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가 2015. 1.부터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대위변제하기 이전인 2015. 4. 초순 무렵에는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 B의 재산처분과는 약 2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만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F아파트 105동 1004호와 이 사건 부동산이 있으며 그 합계액이 393,500,000원인 사실, 소극재산은 위 부동산의 각 담보채출금 등을 비롯하여 합계 485,955,344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채무자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79,463,103원과 채무자 I에 대한 채권 24,884,690원 및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45대 약 34,650,000원 상당도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현재까지 위 채권을 추심하였다거나 위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주장하는 위 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 성립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통해 피고 E에게 처분한 행위(피고 E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대물변제에 해당됨)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피고 J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J은, 자신은 피고 B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J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피고 J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민철

별지